

공학 교육 인증 위원회 규정

제정 2007. 02. 26.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상지대학교 공학교육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라 한다.

제2조(목적) 이 위원회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공학교육인증 관련 제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본교 공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여 본교 공학교육 강화 및 내실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사항
2. 공학교육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3. 공학교육프로그램의 학습성과에 대한 사항
4. 공학교육프로그램 관련 학과 내규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학교육프로그램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자체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7. 기타 공학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과학대학장과의 협의하에 이공과대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6조(보고) ①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 한다.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8조(운영세칙) 이 규정과 관련하여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기획예산과-192, 2007.2.26)

이 규정은 2007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